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7월 10일

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업무를 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기구조정
 - 명칭변경 : 규제개혁담당관 → 녹색정책담당관(안 제6조제1항)

라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 - 241(2009. 5. 14)호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본 개정조례안은

-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괄·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개정안 임
- “규제개혁담당관”을 “녹색정책담당관”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,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 하였으며
- 부칙에 따른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